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2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0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송재봉 · 양부남
김준혁 · 김영호 · 고민정
이수진 · 김 윤 · 박해철
박지원 · 강경숙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「교육기본법」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·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조 및 제2조).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에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”로, “초·중·고등학교의”를 “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의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을 각각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제2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으로, “초·중등학교”를 각각 “유치원, 초·중등학교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제1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초·중등 교육법」에 따라 공교육을 담 당하는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 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 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 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 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「교육기본법」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 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「유아교육 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-----유치원, 초·중·고등 학교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교육관련기관”이란 「초· 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·중학교· 고등학교·각종학교(이하 “학 교”라 한다)와 「고등교육 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 등교육기관(이하 “대학등”이 라 한다)을 말한다.	1. -----「유 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 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 법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“선행교육”이란 교육관련기	2. -----

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
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
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.

- 가. 국가교육과정: 「초·중
등교육법」 제23조제2항에
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
한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
나. 시·도교육과정: 「초·
중등교육법」 제23조제2항
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
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
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
다)의 교육감(이하 “교육
감”이라 한다)이 정한 초
·중등학교 교육과정

- 다. 학교교육과정: 「초·중
등교육법」 제23조제1항에
따라 편성·운영되는 단위
학교 교육과정

3. (생 략)

-----.

- 가. -----「유아교
육법」 제13조제2항 및
「초·중등교육법」-----
--유치원, 초·중등학교--
나. -----「유아교
육법」 제13조제2항 및
「초·중등교육법」-----

-----유치원,
초·중등학교-----

- 다. -----「유아교
육법」 제13조제1항 및
「초·중등교육법」-----

3. (현행과 같음)